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80
----------	-----

2023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3. 5.30.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3. 6. 1.
4. 상정일자 :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3. 6.27.)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3. 6.27.)
    - 승인

## II. 제안설명의 요지 (재무국장 한영희)

-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1,688억원을 편성하여 53건, 816억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794억원을 지출하였음
  
-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예산액은 총 1,471억원이며, 이 중 39건 710억원을 지출결정하여 694억원을 지출하였음
  - 주요 지출내역은 양재 추모공원 진입도로 부지 부당이득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362억원, 침수피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88억원 등임
  
-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217억원을 편성하여, 14건, 106억원을 지출결정하고, 101억원을 지출하였음
  - 주요 지출내역은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16억원, 청와대 소방대 이전배치 11억원 등임

###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 I. 제안경위

-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과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은 서울특별시장이 '23년 5월 30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Ⅱ. 2022회계연도 결산 개요

##### 1. 세입·세출 결산 개요<sup>1)</sup>

- '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3조 4,687억 9,900만원으로 이는 직전 회계연도(47조 7,591억 2,800만원) 보다 12.0%, 5조 7,096억 7,100만원 증가한 것임
  - 최종예산액 52조 3,071억 9,600만원은 당초 본예산(44조 2,190억 4,800만원), 간주처리분(5,207억 400만원), 추경 증액조정분(7조 5,674억 4,200만원)을 합한 것이며
  - 최종예산액과 직전 회계연도 이월액(1조 1,616억 300만원)을 합한 '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직전 회계연도(47조 7,591억 2,800만원)보다 12.0%, 5조 7,096억 7,100만원 증가한 53조 4,687억 9,900만원임

1) ■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0.1% 범위내) 차이 있음

- 세입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52조 8,591억 1,200만원)보다 5.1%, 2조 7,125억 7,000만원 증가한 55조 5,716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40조 7,141억 4,300만원과 특별회계 14조 8,575억 3,900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45조 3,336억 9,100만원)보다 10.9%, 4조 9,428억 9,600만원 증가한 50조 2,765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37조 1,167억 7,300만원과 특별회계 13조 1,598억 1,3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7조 5,254억 2,100만원) 보다 △2조 2,303억 2,600만원 감소한 5조 2,950억 9,500만원임

〈표 2-1〉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가)	세출결산액 (나)	결산상잉여금 (가)-(나)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	
2022	총계	53,468,799 <2022최종> 52,307,196 <2021→2022이월> 1,161,603	55,571,682 (103.9%)	50,276,587 (94.0%)	5,295,095 (9.9%)	명 시 이 월 <sup>주1)</sup> 348,007 사 고 이 월 766,058 건설개량이월 <sup>주1)</sup> 12,329 계 속 비 이 월 - 보조금실 제반납금 83,141 채 무 상 환 - 물 납 등 - 순 세 계 잉 여 금 4,137,946
	일반회계	38,319,642 <2022최종> 38,050,516 <2021→2022이월> 269,125	40,714,143 (106.2%)	37,116,773 (96.9%)	3,597,370 (9.4%)	명 시 이 월 <sup>주1)</sup> 81,713 사 고 이 월 193,448 계 속 비 이 월 - 보조금실 제반납금 67,351 채 무 상 환 - 물 납 등 - 순 세 계 잉 여 금 3,254,857
	특별회계	15,149,156 <2022최종> 14,256,679 <2021→2022이월> 892,477	14,857,539 (98.1%)	13,159,813 (86.9%)	1,697,725 (11.2%)	명 시 이 월 <sup>주1)</sup> 253,964 사 고 이 월 572,610 건설개량이월 <sup>주1)</sup> 12,329 계 속 비 이 월 - 보조금실 제반납금 15,790 채 무 상 환 - 물 납 등 - 순 세 계 잉 여 금 883,089

※ 주1)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만, 건설개량이월은 공기업특별회계만 작성됨  
(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1 ('23. 4. 17)

## 2. 예비비 결산 개요

- '22회계연도 예비비는 1,688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816억 2,1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794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2-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계	168,804	81,621	79,428	445	1,748
일반회계	147,070	70,995	69,349	12	1,633
특별회계 <sup>주1)</sup>	21,733	10,626	10,078	432	115

※ 주1)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521 ('23. 4.10)

## 3. 기금 결산 개요

- 17개 기금, 25개 계정을 운용한 '22회계연도말 조성액은 7조 2,080억 8,1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말 조성액(5조 378억 3,500만원)보다 2조 1,702억 4,600만원 증가한 것임
  - '22회계연도의 경우, 당해연도 조성액은 4조 8,531억 1,100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조 6,828억 6,500만원임
- 17개 기금, 25개 계정을 운용한 결과 수입은 6조 8,626억 6,100만원, 지출은 6조 8,360억 7,100만원으로 기금의 결산결과를 제출하였음

### Ⅲ. 예비비 지출 관련 검토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은 지출된 예비비에 대해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아울러 관련 조례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는 매 회계연도 결산서 및 기금 결산서와 함께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고 있음
  
- 예비비의 경우, 관련 법령은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회계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관련 법령은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의 경우에는 예산총액 100분의 1 이내의 금액과 별도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는 당초 본예산에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로 200억원을 편성한 바 있음
  
- '22회계연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의 경우, 본예산에 1,19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2년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1,100만원)과 7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80억 3,200만원)을 통해 당초 편성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를 1,270억 7,000만원으로 조정하였음
  -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 기타특별회계와 2개 공기업특별회계에 예비비 21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경예산(△900만원)과 제2회 추경예산(9,700만원)을 통해 217억 3,300만원으로 조정하였음

〈표 3-1〉 2022회계연도 예비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본예산	추경예산		최종예산
		제1회	제2회	
총계	160,671	2	8,130	168,804
일반회계	139,025	11	8,032	147,070
일반예비비	119,025	11	8,032	127,070
목적예비비	20,000	-	-	20,000
특별회계	21,645	△9	97	21,73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521 ('23. 4.10)

- '22회계연도에 편성된 예비비는 총 1,688억 400만원으로 이 중 816억 2,100만원(57건)을 지출결정하여 794억 2,800만원(57건)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표 3-2〉 예비비 지출 현황 ('22회계연도~'20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집행잔액 <sup>주1)</sup> (가-나-다)
2022	소 계	168,804	81,621	79,428	445	1,748
	일반회계	147,070	70,995	69,349	12	1,633
	특별회계	21,733	10,626	10,078	432	115
2021	소 계	167,693	93,814	90,771	-	3,042
	일반회계	150,946	89,777	86,767	-	3,010
	특별회계	16,747	4,036	4,003	-	32
2020	소 계	161,553	126,743	125,818	48	876
	일반회계	148,037	123,891	123,065	48	776
	특별회계	13,516	2,852	2,752	0	99

※ 주1) 집행잔액은 지출결정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금액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중 지출결정되지 않은 76억 7,400만원(1,470억 7,000만원-709억 9,500만원)은 불용처리됨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521 ('23. 4.10)

-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에는 1,470억 7,000만원중 48.2%, 709억 9,500만원(39건)을 지출결정하고, 693억 4,900만원(39건)을 지출한 것으로
  - 일반예비비는 664억 3,600만원(27건)을 지출결정하여 653억 2,700만원(27건)을 지출하였으며, 목적예비비는 45억 5,800만원(12건)을 지출결정하여 40억 2,100만원(12건)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예비비 5건, 36억 1,3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6억 1,3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에서 4건, 27억 9,7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27억 9,700만원 전액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건, 34억 1,6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28억 6,800만원(8건)을 지출하였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1건, 8억 5,0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8억 4,900만원(1건)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22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일반회계 예비비(1,470억 7,000만원)중 3.3%, 49억 3,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3-3〉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중 코로나19 관련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일반회계 예비비 (A)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 지출액 (B)	비 율 (B/A)
'22회계연도	147,070	4,930	3.3
'21회계연도	150,946	61,869	40.9
'20회계연도	148,037	61,056	41.2

※ 자료근거 : ①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21654 ('22. 5. 2)  
②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521 ('23. 4.10)

○ 관련 법령은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바, '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건중 보조금으로 지출한 사례에 대해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표 3-4〉 예비비 지출액중 보조금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비비 지출액 (A)	예비비를 통한 보조금지출액 (B)	비 율 ( B / A )
계	79,428	13,794	17.3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12,737	16.0
침수피해 소상공인 복구지원(서울시 지원금)		9,049	11.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활동지원급여		3,125	3.9
이 태 원 사 고 장 례 비 지 원		413	0.5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150	0.1
자 치 단 체 자 본 보 조		578	0.7
총 합 사 회 복 지 관 기 능 보 강		578	0.7
민 간 자 본 사 업 보 조 ( 자 체 재 원 )		289	0.3
코 로 나 1 9 대 응 체 계 구 축		78	0.09
장 애 인 거 주 시 설 기 능 보 강		69	0.08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기 능 보 강		62	0.07
장 애 인 주 간 보 호 시 설 기 능 보 강		55	0.06
장 애 인 자 립 생 활 지 원 센 터 운 영		24	0.03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188	0.2
코 로 나 1 9 대 응 체 계 구 축		188	0.2

- 관련 법령은 예비비의 지출제한에 대해 보조금중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 및 집중호우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지원 등을 위해 지출한 예비비의 경우에는 긴급재해대책에 해당되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표 3-5〉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예비비 지출제한**

**다. 예비비의 지출제한**

-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
  - 내재적 제약
    - ①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 ②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됨
  - 실정법상 제약(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 ①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 ② 업무추진비·보조금 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

자료근거 :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1. 7), p.415

- '22회계연도중 지출된 예비비 집행사례를 검토하면, 홍보기획관은 코로나 확진자가 정점 예상치보다 초과 발생하여 재택치료 상담이 폭증함에 따라 '22년 3월, 서울시 코로나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자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3개월간 콜센터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 21억 8,100만원을 지출계획 한 바,
- 예산부서가 3월 25일, 관련 예비비를 사용승인 하였고, 사업부서는 지출 계획한 예비비(21억 8,100만원)중 14.6%, 3억 2,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표 3-6〉 120다산콜재단 운영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예비비 사용승인일	예비비 지출일
사무관리비	2,181	1,861	320	'22. 3.25	'22. 6.30

- 사업부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과 실제 운영시 월별 인력운용 규모가 변동됨에 따라 인건비 및 보험료 등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콜센터 운영업체와 합의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 관련 기준은 계획이 변경되어 관련 예산을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작성할 것으로 정하고 있어,
  - 당초 계획한 인원과 실제 운용시 인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불용액은 결산서 작성시 **지출잔액이 아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소방재난본부는 '22년 11월,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일부 지급하고자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22년 11월 당시 사업부서가 파악하고 있는 예비비 잔액 15억 9,700만원 전액을 지출할 것으로 계획하였음

- 예산부서는 12월 1일, 관련 예비비를 사용승인 하였으며 동 세부사업중 배상금의 경우, 결산결과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98억 7,900만원)중 17만 2,280원을 제외하고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3-7〉 미지급초과수당 관련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요청액		승인잔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소방행정 기반강화	직무환경 개선	예비비	예비비 (801)	예비비 (01)	1,597	-	△1,597	0
소방행정 기반강화	직무환경 개선	소방활동 지원	배상금등 (305)	배상금 (01)	8,282	1,597	-	9,87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소방행정과-42786 ('22.11.30)

- 소송결과에 대해 패소할 것으로 예측하여 회계연도 내에 배상금 등을 미리 편성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바, 사업부서는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하여 남은 예비비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나
- 지난 '22년 7월, '22년도 제2회 서울시 추경예산 심사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항소한 부분(공동근무수당분)과 관련하여 타 시·도의 유사사례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였고
  - '22년 11월, 서울시가 제출한 '23년도 서울시 본예산 심사시에도 동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부담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음
- 예비비는 긴급히 발생하는 재해·재난, 예측불가능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는 것으로 소송과 관련된 비용 지출사례는 예비비의 편성 취지를

회석시킬 수 있어 소송에 따른 예비비 사용요구와 지출결정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만, 동 예비비 지출사례는 패소에 따른 배상이 아닌 타 지자체 화해권고 사례를 고려하여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에 초과수당 지급대상자와 정산합의를 통해 배상금 우선 지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22년 11월 30일에 '미리 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사료되나
  - '23년도 본예산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예산심의과정에서 시의회에 소요 예산의 필요에 대해 설명하고,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방재정제도 해설사례집」은 판결에 따른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하기 보다는 이용·전용 등을 우선 활용하도록 회신한 바 예비비를 통해 지출하기 전에 이용·전용 등의 방법도 고려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동 예비비 지출 건과는 별개로 소방재난본부는 회계연도중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예산현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서울시의회는 '22년 7월 제2회 추경예산 심사시 소방특별회계 예비비를 5,100만원 증액하여 의결한 바 있으나 해당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예비비 사용계획 관련 방침서에 예비비 잔액을 0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됨
  - 더욱이, 사업부서가 제출한 세출결산 관련 자료에도 소방특별회계 예비비의 증액 시기를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작성하고 있어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관리에 소홀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3-8〉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시기	증액	지출	잔액
2022년도 본예산 의결액	'22. 1	2,746	-	2,746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 보수	'22. 6	-	△1,149	1,597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의결액	'22. 7	51	-	1,648
소 방 활 동 지 원	'22.11	-	△1,597	51
'22회계연도 결산서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불용액				51

- 행정국은 서울시 직원의 코로나19 자가검사 실시를 위해 예비비를 지출할 것으로 계획한 바, 일반회계 예비비 10억원을 지출 승인받아 24.5%, 2억 4,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3-9〉 코로나19 자가검사 실시(예비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예비비 사용승인일	예비비 지출일
사 무 관 리 비	1,000	245	754	'22. 2. 4	'22. 2. 9

- 관련 방침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분청 및 사업소, 상주근로자 등 17,200명을 대상으로 매주 2회씩 총 24회 분량의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하고자 계획하였으나
  - '22년 4월, 코로나19가 2등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부서의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감소하여 지출계획된 예비비중 75.4%, 7억 5,4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표 3-10〉 자가검사키트 구매 현황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계약일시	키트 수량	구매단가	금액	비고
계	101,000	모두 동일	245,040	예비비 지출
'22.02.25	51,000	2,420	123,420	
'22.04.04	25,000	2,420	60,810	
'22.04.22	25,000	2,420	60,810	

- 예비비가 지출 결정되고 지출한 이후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외에는 재활용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22년 2월부터 '22년 4월까지 12주 동안 주 2회, 전 직원을 검사할 수 있는 분량의 자가검진키트를 한 건의 예비비 지

출 건으로 요청하기보다는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마다 예비비 사용승인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시민건강국은 '22년 3월부터 5월까지 한시적으로 소아전용 코로나19 외래 진료센터를 운영하고자 예비비를 지출할 것으로 계획한 바, 일반회계 예비비 9억 6,500만원을 지출 승인받아 49.5%, 4억 7,8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1〉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예비비 사용승인일	예비비 지출일
계	965	478	487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3	210	32	'22. 3. 8	'22. 4. 8
민간경상사업보조	622	188	433	'22. 3. 8	'22. 4.1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00	78	21	'22. 3. 8	'22. 4. 7

- 지난 '22년 4월, 정부방침에 따라 서울시에 소아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 센터가 44개소에서 777개소로 증가하고, 소아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 소아전용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운영을 종료하고, 소아 진료가 가능한 민간병원 등으로 대체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계획을 조기 종료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예비비 지출계획 당시 '22년 5월 31일까지 운영계획한 소아전용 외래진료센터를 5월 1일까지 운영하고 조기 종료하는 것으로 변경한 결과 예비비 지출결정액의 50.5%, 4억 8,7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됨
- 사업부서는 영·유아 및 어린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에 대응하고자 소아전용 외래진료센터를 구축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우선시 하였을 것이나,
  - 예비비는 예산의 성격상 지출결정된 이후에는 회계연도중 다시 예비비로 환원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예비비를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다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필요한 만큼만 지출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중 공업용수관 불용관 정비에 예비비 지출을 계획하여 지출결정된 예비비(12억원)중 58.3%, 6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3,200만원을 이월한 것으로 제출한 바,

〈표 3-12〉 불용관 정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사용승인일	예비비 지출일
수 선 유 지 교 체 비	1,200	699	432	67	'22. 3. 2	'22. 5.31

- '22년 3월, 예비비 지출이 결정된 이후 공사중 장애발생으로 작업구를 추가로 설치하고, 동절기 작업시 안전문제 및 품질관리가 어려워 준공기한을 '23년 6월로 연기함에 따라 지출결정된 예비비중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훈령을 통해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예비비 지출은 지양하고,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을 지양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예비비 지출 사례의 경우, '22년 3월, 예비비 지출이 결정되어 예비비 지출계획 시점부터 이월을 전제한 것으로 사료되지 않으나, “2022년 공업용수 폐쇄관 충전공사”가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 긴급성을 필요로 한 사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공업용수관 정비 계획 보고」에 따르면 폐쇄 공업용수관 7,870m중 4,490m에 대한 관 내부를 충전하고, 나머지 3,380m는 '23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 공사추진 일정의 경우에도 ① '22년 3월, 예비비 지출이 결정된 이후 ② '22년 6월,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③ '22년 7월, 공사를 착공(공사

기간 : '22. 7. 1~'23. 1. 16)하였으나, ④ '22년 12월, 동절기 도로굴착통제로 공사기간이 연기되는 등 통상적인 관로공사와 차별하여 예비비로 추진할 만큼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라 하여도 이월사유가 충족되면 이월이 가능할 것 이나 예비비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된 것이라는 당초의 편성 취지가 예비비 지출결정에 앞서 우선 고려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3〉 주요 공사추진 개요

날짜	소관부서	업무내용
'22. 3. 2	생산관리과	세출예산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재배정 요청
'22. 3. 3	기획예산과	예비비 사용 승인
'22. 3. 4 ~ '22. 4.18	시설관리과	공사설계
'22. 4.19	시설관리과	공사계약 심사 요청
'22. 4.25	계약심사과	계약심사 서류 보완 요청
'22. 4.27	시설관리과	공사계약 심사 수정 요청
'22. 4.28	계약심사과	계약심사 결과 알림 - 승인
'22 5. 4	시설관리과	공사시행 계획수립
'22. 5.10	시설관리과	공사 계약 의뢰
'22. 5.15	재무과	입찰공고 개시
'22. 5.24	재무과	낙찰자 선정
'22. 5.25 ~ '22. 6.27	재무과, 건설혁신과	낙찰업체 적격심사 및 건설업 실태조사
'22. 6.28	재무과	공사 계약체결 통보
'22. 7. 1	시설관리과	공사 착공 - 공사기간 : '22. 7. 1 ~ '23. 1. 16
'22.12. 1	영등포구 도로과	동절기 도로굴착통제 시행 알림
'22.12.29	시설관리과	공사 연기 - 공사기간 : '22. 7. 1 ~ '23. 6. 4
'22.12.30	시설관리과	사고이월 (이월액 : 4억 3,200만원)

※ 자료근거 :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4939 ('23. 5.19)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소송과 관련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규모는 직전 회계연도(188억 5,300만원)보다 298억 1,800만원 증가된 486억 7,100만원 지출되었으며,
  - 소송 관련 일반예비비 지출비율은 70.1%로 직전 회계연도(21.7%)보다 48.4%포인트 증가된 것임

〈표 3-14〉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중 소송 관련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일반예비비 지출액 <sup>주1)</sup> ( A )	소송관련 예비비 지출액 ( B )	비 율 ( B / A )
' 2 2 회 계 연 도	69,349	48,671	70.1
' 2 1 회 계 연 도	86,767	18,853	21.7
' 2 0 회 계 연 도	123,065	30,432	24.7
' 1 9 회 계 연 도	161,349	97,228	60.3
' 1 8 회 계 연 도	30,125	23,870	79.2

-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예비비를 통해 지출하는 것은 긴급히 발생하는 재해·재난, 예측불가능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비비의 편성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어 소송에 따른 예비비 사용요구와 지출결정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5〉 실·본부·국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건)

실·본부·국		지출결정액 <sup>주1)</sup>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건수 <sup>주3)</sup>
합	계 <sup>주2)</sup>	81,621	(100.0)	79,428	1,748	57
	안 전 총 괄 실	44,022	(53.9)	44,022	0 <sup>주4)</sup>	6
	노 동 공 정 상 생 정 책 관	9,301	(11.3)	9,299	2	4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5,452	(6.6)	5,452	0 <sup>주4)</sup>	2
	복 지 정 책 실	4,930	(6.0)	4,881	49	10
	수 도 사 업 본 부	3,416	(4.1)	2,868	114	8
	시 민 건 강 국	3,079	(3.7)	2,573	505	5
	소 방 재 난 본 부	2,746	(3.3)	2,746	-	4
	홍 보 기 획 관	2,181	(2.6)	1,861	320	1
	재 무 국	1,577	(1.9)	1,577	0 <sup>주4)</sup>	3
	균 형 발 전 본 부	1,376	(1.6)	1,376	0 <sup>주4)</sup>	2
	행 정 국	1,000	(1.2)	245	754	1
	물 순 환 안 전 국	850	(1.0)	849	0 <sup>주4)</sup>	1
	도 시 교 통 실	392	(0.4)	392	0 <sup>주4)</sup>	2
	푸 른 도 시 여 가 국	387	(0.4)	375	-	2
	기 후 환 경 본 부	349	(0.4)	349	0 <sup>주4)</sup>	1
	주 택 정 책 실	197	(0.2)	197	-	1
	문 화 본 부	152	(0.1)	152	0 <sup>주4)</sup>	2
	시 립 미 술 관	150	(0.1)	150	-	1
	디 지 털 정 책 관	56	(0.06)	56	-	1

※ 주1) 지출결정액 규모순

주2)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함에 따라 “계”와 “실본부국별 집행잔액”간 차이 있음

주3)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통계목 기준)

주4) 집행잔액은 안전총괄실 2,000원, 도시기반시설본부 835원, 재무국 305원  
 균형발전본부 810원, 물순환안전국 453,000원, 도시교통실 637,750원  
 기후환경본부 430원, 문화본부 80원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승인(2023. 6.27.)**

#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 번호	880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예비비 예산액 1,688억 400만원 중 816억 2,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94억 2,800만원을 지출함

가.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470억 7,000만원
- 지출결정액	709억 9,500만원
- 지출액	693억 5,000만원
- 이월액	1,200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16억 3,400만원임.

나.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95억 5,900만원
- 지출결정액	42억 6,700만원
- 지출액	37억 1,900만원
- 이월액	4억 3,300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1억 1,500만원임.

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21억 7,500만원
- 지출결정액	63억 6,000만원
- 지출액	63억 6,000만원
- 이월액	0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0만원임.

###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

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 ② 검사위원회는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 ③ 검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바.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결산 감사의 내용과 범위)

- ① 검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 1. 결산 개요
  - 2. 세입·세출 결산
  - 3. 재무제표
  - 4. 성과보고서
  - 5. 결산서의 첨부서류
  -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

사.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